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07
----------	------

발의연월일 : 2017. 4. 25.

발 의 자 : 주호영 · 김현아 · 정양석
김재경 · 황주홍 · 박인숙
정병국 · 유승민 · 하태경
이종구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인 내용을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유럽에서도 가짜뉴스가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인터넷 등에서 가짜뉴스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현재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나 「형법」에 따라 처벌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론 및 정정

보도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후적 처벌 및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파력이 크고 정보도에 관심이 적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가짜뉴스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인식을 되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가짜뉴스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포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뿐만아니라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뿐만아니라 판단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4제3항 및 제5항).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되,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유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2조의8제1항,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6항제5호 신설).

다.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자 또는 해당 정보 게시자 등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8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제3항 전단 중 “대화방”을 “대화방·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 전단·후단 중 “제한을”을 각각 “제한 또는 판단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줄 것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지 또는 제한된”을 “정지·제한되거나 또는 판단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한”으로 한다.

제8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8(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짜뉴스의 유포 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유포(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을 한 사람, 해당 요청사항과 관련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관련자료와 그 밖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요청 받은 사항이 가짜뉴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로 표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보를 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가짜뉴스에 대한 표시,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가짜뉴스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82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
- 6.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61조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 다만,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줄 것을-----

-----.

-----제한 또는 판단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줄 것을

-----제한 또는 판단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줄 것을-----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정지·제한되거나 또는 판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
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생략)

<신설>

단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한---

-----.

⑥ (현행과 같음)

제82조의8(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짜뉴스의 유포 금지) ① 누

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

하여 가짜뉴스(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

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

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시킬 목

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유포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는 가짜뉴스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

방·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을
한 사람, 해당 요청사항과 관련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
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
된 관련자료와 그 밖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요청 받은 사항이 가짜뉴
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
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가 가짜
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통
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로 표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보를 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가짜뉴스에 대한 표시, 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

③ (생략)

<신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생략)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가짜뉴스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신설>

③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82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따르지 아
니한 자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6.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4. (생략)

5. 제8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 다
만,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제
외한다.

⑦ ~ ⑪ (생략)

⑦ ~ ⑪ (현행과 같음)